제97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금지대상 건물의 유형(신설) ㅇ 집합건물 소유자·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ㅇ 금지대상 건물 유형 – 현행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▶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 2.건물관리주체의 범위(신설) ㅇ 집합건물 소유자·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ㅇ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–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, 연립주택,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의 소유자, 관리주체, 관리단 및 관리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사업자, 단체, 개인 등 ▶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3조	
2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집합투자재산의 정기적 공정가치 평가 등(신설) ㅇ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관행 정착 및 운용성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年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 및 외부평가 의무화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▶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의2	1.비중요
3	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인증기관의 재심사 실시 의무(신설) ㅇ 재심사 사유가 명확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 기관이 반드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 - 재심사 신청인이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-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 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-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.인증심사원의 교육의무 사항(신설) ㅇ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시 교육해야 하는 내용, 교육방법, 교육 시간, 교육 결과의 활용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구체적인 교육 관련 권한 위임 등 법 제26조의4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마련 ▶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3.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(신설) ㅇ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마련 - 인증기관의 운영, 업무 수행의 적정성, 재무구조 건전성 등 인증기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 규정 ㅇ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마련 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 ▶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4, 제36조의5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유기식품 인증기준(강화) ㅇ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중 유기수산물의 생산자의 경우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(최소 사육기간) 이상을 유기수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양식하도록 하는 기준 추가 ▶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.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(강화) ㅇ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하위법령의 위반행위 및 처분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, ㅇ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의 수위를 재설정하는 등 처분기준 개정 ▶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, 제36조, 제40조, 제41조	
4	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출산전후휴가 확대 대상인 미숙아의 범위 규정(신설) ㅇ 출산전후휴가기간 연장 대상인 미숙아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조의2의 미숙아 기준 등으로 규정 ▶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인 고위험임신부의 범위 규정(신설) ㅇ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청구기간 확대 대상인 유산,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 ▶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	
5	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(국방부)	1.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(신설) ㅇ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3회로 제한하고, 2차시험(필기시험)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 1차시험(서류전형)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 ▶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3	1.비중요
6	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전송 요구 대상 정보(신설) ㅇ 통신 분야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 구체화하여 규정 ▶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2조	1.비중요
7	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(법무부)	1.외국인 등이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(신설) ㅇ 유족의 장해·중상해구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상호보증 없는 외국인의 구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※ 다만, 구조피해자가 장해 · 중상해구조금 신청 당시 이미 제출했던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생략 가능 ▶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,제7조제7조의2	
8	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전송 요구 대상 정보(신설) ○ 보건의료 분야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 구체화하여 규정 ▶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2조	1.중요
9	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법무부)	1.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(신설) ○ 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, 분할 지급 총 기간, 구조피해자나 유족 사망 시 남은 구조금 지급방법 규정 ▶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	1.비중요
10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, 시설 등 기준 신설(신설) ○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, 시설, 운영 등 기준 설정 * 단, 현행 기준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및 별표 10 등) 적용 ▶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▶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냉 · 온수기 및 정수기의 설치 · 관리(신설) ㅇ 기기 설치관리자의 관리 의무 부여 ▶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▶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.먹는샘물 등의 제조 수입 판매업 영업허가 및 수입신고 절차(강화) ㅇ 수질 안전성 증빙 수질검사서를 1년 이내의 수질검사서로 검사기간 구체화 ㅇ 정수기 제조업, 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변경신고 사항 추가 ▶먹는물관리법 제21조 ▶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3.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(별표5)(강화) ㅇ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(OEM 등) 기록일지를 1년에서 3년간 보관토록하고, 수질기준 초과시 시도지사에게 보고 ▶먹는물관리법 제30조 ▶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4.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검사 기준(신설) ㅇ 자가 품질 검사의 횟수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다음 각 목을 따른다.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가. 누적 생산량이 3천대 초과 시점에 최초 검사 실시 나. 최초 검사 이후 6개월마다 실시 ※ 누적 생산량이란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누적된 생산량을 말한다. ▶먹는물관리법 제41조 ▶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5.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신설) ㅇ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련 거짓 결과작성 기술인력 및 재위탁 기관 행정처분 추가 ㅇ 용출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존의 규정에서 구분하여 규정 ㅇ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초과 정수기에 대한 별도 폐기 명령의 근거 규정 마련 ▶먹는물관리법 제43조 ▶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	